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 정 2009. 3.

개 정 2012. 7.

개 정 2013. 1.

개 정 2013. 2.

개 정 2019. 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 제9조에 의거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정의) 조기졸업이란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조기에 충족하고 학칙 제8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학위수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05.08)

제3조(적용범위) 본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신청자격) ①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학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학기 취득예정학점을 가산하여 학칙 제29조에서 정한 졸업학점 충족 가능 자로서, 소속 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19.05.08)

2. 삭제 (2012.9.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신청일 현재 이수중인 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 총 7개 학기이상 및 여름·겨울학기 총 5개 학기이상을 이수중인자로 한다.(신설 2019.05.08)

제5조 (대상자 선정) ①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제4조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자로서 소속 학부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제4조제2항에서 말한 수업연한 충족 시 조기졸업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조기졸업 사정 대상자로 한다.(신설 2019.05.08)

제6조 (자격상실) 조기졸업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칙 제54조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학칙 제22조 제2항에 의해 휴학한 학생

3. 조기졸업을 포기한 학생

제7조 (조기졸업 사정기준) ①조기졸업의 사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칙에서 정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체 학년 평점평균이 4.25 이상인 자.(개정 2019.05.08)

2. 삭제 (2012.9.7)

3. 삭제 (2012.9.7)

②졸업사정 결과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졸업으로 처리하며, 학생은 다음 학기에 수강 및 등록을 완료 하고 학칙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개정 2019.05.08)

③제1항1호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이후 신입학생의 조기졸업에 필요한 전체 학년 평점평균은 '졸업 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제22조1항에 따른다.(개정 2019.05.08)

제8조 (조기졸업 사정시기) 조기졸업 대상자의 졸업사정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해당학기의 졸업사정 기간

(1학기 신청의 경우 여름학기 포함, 2학기 신청의 경우 겨울학기 포함)에 한다.

제9조 (기타사항) ①조기졸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2010년 현재 4학년 재학생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2010학년도 현재 3학년 이하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변경된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단, 2011년 10월 이전에 편입한 외국인 유학생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